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34

발의연월일: 2020. 11. 17.

발 의 자:김상훈·태영호·김희국

윤두현 · 양금희 · 한무경

강기윤 · 조수진 · 박대출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고 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

그러나,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육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 2021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3, 제11호 및"을 "제9호의3 및"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1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u>제9호</u>	<u>제9호</u>
<u>의3, 제11호 및</u> 제12호는 2020	<u> 의3 및</u>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u>적용</u>	<u>적용하며,</u>
<u>하며, 제8호</u> 및 제8호의2는 201	제1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u>체결된 것</u>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u>에만 적용하며</u>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